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7. 1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9년 6월 24일

나. 발 의 자 : 김동식 의원 외 6인

다. 회부일자 : 2009년 7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 7. 2)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 案 說 明 者 : 김동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 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4조부터 제9조)
- 장기기증 희망신청서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에 장기이식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사회를 구현하고, 장기기증 등록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25 호
----------	---------

제안년월일 : 2009. 6. 24

발 의 자 : 김동식 의원

1. 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 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4조부터 제9조)
- 나. 장기기증 희망신청서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다.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 나. 예산조치 : 2010년 본예산 반영필요
- 다. 기 타
 - (1)입법예고 결과 : 해당사항없음
 - (2)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영등포구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내 민원담당 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관내 종교계 인사
3. 관내 의료단체 임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
4. 영등포구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 대표, 사회지도층 인사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 등록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전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5명 이내의 장기기증 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구청장은 위촉된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